

특히 간첩이나 거동수상자 출현시는 잠복한 간첩, 거동수상자가 보안분석조의 출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노출방지, 현장보존에 유의

보안분석조가 현장에서 활동시 최대한 유의하여 감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간첩이 침투했을 경우 어느 지점에 은신하여 보안분석조의 활동을 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보존에도 유의하여 다른 보안분석조가 출동했을 경우에도 분석판단이 가능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및 최초 신고내용과 상이점 파악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안상황에 있어서도 현장조사는 상황분석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격언은 보안상황에서도 공통되는 것이다. 현장 및 주변일대에 대한 다각적인 정밀관찰과 조사활동으로 공작장비 및 용구, 문건(암호서, 일기장 등), 지문, 혈흔, 분비물, 기타 용의품, 탄흔, 탄피(교전시) 등 유류품의 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된 공작장비 및 유류품은 원상보존으로 감정 또는 판단에 공여하고, 침투은거지 및 복귀여부에 대한 흔적(족적 등)을 발견하여 침투 또는 도주경로와 방향, 거리, 인원 등을 추정하는 등 보안관련사항을 분석해야만 한다.

또한 최초 신고내용과 현장상황의 상이점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신고자의 신뢰성 파악 및 보안용의점 유무를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4) 신고자와 면담으로 신고자의 신뢰성 파악

신고자를 현장으로 불러내어 신고하게 된 경위, 목격행위 당시의 자세한 상황, 신고자의 진실성, 과장신고 여부 등을 알아보아 신고자의 신뢰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보안용의점 유무를 판단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현장으로부터 원거리 하차 현장접근 모습

(5) 현지주민, 목격자 등 탐문 수사

현장주변 상황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지주민이므로 탐문수사를 철저히 하면 분석판단에 참고가 될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목격자가 직접 신고자일 경우도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개한 사실을 알고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아무튼 현장을 직접 관찰한 목격자의 진술 내용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사관은 신고자, 목격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냉정, 침착하게 사리를 판단해야 한다.

(6) 본대로, 상황 그대로 메모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관찰한 인원, 장비, 유류물 등 현장상황을 과장되거나 주관의 개입없이 그대로 메모해 두면 분석판단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5. 分析判斷

가. 분석판단의 의의

발생한 보안상황의 정확성과 신뢰도 여부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한 것으로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사태검토와 종합정리를 위한 기본과정이다. 즉, 상황의 분석이란 상황발생 및 전개과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거증적으로 확인하여 관련성을 검토 체계화하는 것을 말하며, 판단이란 분석한 내용을 거증적으로 종합하여 결과발전과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때문에 분석판단은 각기 다른 뜻과 의의를 가지면서도 불가분의 절대적 상호 관계를 가져야 하며 정책 결정권자에게 사태에 따른 처리방향과 결심을 주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보안경찰은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각종 정보를 상황으로 종합정리, 판단하여 지휘관 또는 정책결정권자에게 가능한 행동방책을 도출하여 주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 이 일을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나. 분석판의 자질

(1) 전문적 지식

전문적 지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즉, 북한의 전략전술, 간첩양성과정, 간첩침투방법, 위장방법, 간첩장비, 통신문건 등 그때 변천하는 전술과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2) 객관적 분석능력

편견을 배제해야 하며, 객관성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과 물증이 필요하고 추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3) 풍부한 상상력, 세밀한 관찰력, 명료한 판단력

풍부한 상상력과 세밀한 관찰력,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평소에 이를 배양하여야 한다.

다. 분석판단 요령

(1) 간첩 술과의 부합여부 판단

과거 간첩 전술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과거 간첩사건의 내용별 분류가 필요하다.

(2) 관련사항에 대한 비교대조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과거 동일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교 검토해야 하며, 인근지역 발생 사건과의 비교분석도 하여 관련성을 분석, 보안용의점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3) 종합분석평가를 다각도로 정확히 하여야 한다.

보안용의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긍정적인 요소, 보안용의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정적이 요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도출한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 하나의 논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라. 분석 과정의 주의사항

(1) 전체적 관련성을 추리하여야 한다.

(2) 사태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분석과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많은 타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4)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상황과 결론이 맞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마. 판단을 위한 구비요건

(1) 모든 사태를 객관성있게 관찰, 종합판단 하라.

즉, 사실 그대로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2) 객관적 자료를 예시하고 간명하게 기술하라.

즉, 판단은 반드시 실제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며,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야 한다.

(3) 시간성(신속성)을 지켜라.

(4) 과대한 표현방법을 지양하고 타성을 극복한다.

(5) 사소한 의심점이라도 끝까지 확인하라.

(6) 종합적인 판단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의견을 종합, 합동판단 하라.

(7) 판단이 불가능할 때는 현장실황을 세밀히 기술하여 보고하라.

〈판단을 위하여 배제되어야 할 점〉

- (1) 주관적 선입관에 맞추는 판단
- (2) 불충분한 자료를 응용한 판단
- (3) 불합리한 사실을 가지고 한 추리 판단
- (4) 중요한 사실을 결락한 판단
- (5) 임의적으로 증거물을 제거하고 한 판단

6. 報告

가. 一般原則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 (1) 적시성
- (2) 정확성
- (3) 간결성
- (4) 보안성

나. 報告要領

(1) 보고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황이 발생하면 종결될 때까지 1, 2, 3보 등으로 정황 전개에 따른 미비의문점을 보완토록 하며, 보고에 일관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2) 미비점에 대한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확인·구비되어야 하며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1, 2차보고시마다 미비사항을 명시하고 동 사항의 조사, 확인 및 조치내용을 기술하여 상황유지에 계속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황보고서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신속성과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단계별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즉보하여야 한다.

* 1, 2차 보고가 반드시 구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第5章 「드보크」發掘要領



'97 검거된 부부간첩이 사용한 드보크 발굴장비

第1節 「드보크」概念과 種類

1. 「드보크」⁴⁸⁾의 概念

가. 드보크는 러시아어로 참나무를 뜻하는 “두푸”에서 유래된 공작용어로서, 과거 상호연락 수단이 없었던 시베리아지방에서 동네 입구에 서 있는 큰 참나무를 표식으로 하여 편지나 연락물을 갖다 놓았던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48) 비밀공작에 있어서 연락의 수단으로서 수수(授受)하는 조직원간의 직접 접촉하는 개인회합과 직접 접촉없이 연락을 하는 차단이 있는데 이러한 차단에는 유인포스트(수수자) 이동과 고정, 무인포스트(수수소) 이동과 고정이 있다. 이때 무인포스트 고정을 드보크라 한다.

나. 드보크는 일명 「무인포스트」라고도 하며 사람을 통하지 않고 자연지물을 이용한 비밀함에 의하여 상·하향 문건이나 물건, 공작금, 공작장비, 무기 등을 주고받는 연락수단이다. 이는 대인 접선으로 인한 위험성이나 노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드보크는 해방 이후부터 북한 대남 공작부서에서 주요 연락수단으로 활용해온 고전적 수법이나, “주고받는 사람(상·하부선)이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남파 간첩이나 고정간첩들의 연락 수단이 될 것임.

2. 「드보크」의 種類

드보크의 종류는 위치나 역할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나 설치위치에 따라 해안 드보크와 내륙 드보크로 구분되고 있다.

가. 해안 드보크

- (1) 해안선 일대에 공작조와 안내조가 상호 약정하여 설치
- (2) 내륙 드보크보다 북한과의 연락이 용이
- (3) 침투장비나 아군과의 교전 등 비상시 사용 가능한 무기를 매몰

나. 내륙 드보크

- (1) 북한 공작부서에서 기수집한 남한지역 사진, 지도 등을 검토 후 선정하여 고정간첩들에게 무전지령으로 장소와 발굴시기를 알려주거나
 - (2) 남파공작원이 현지 대상자와 같이 답사 후 선정
 - (3) 고정간첩망에게 공작금, 무전기 등 공작장비 하향전달 및 대북상향 보고시 활용
- ※ 이외에 엄밀한 의미에서 드보크로 볼 수는 없으나 국내 고정간첩들이 공작금품이나 무전기, 권총 등을 집 마당, 주거지 인근 야산 등에 매몰해 두는 경우도 있음.

第2節 場所選定要件 및 設置容疑地域

1. 「드보크」場所選定要件

- 가. 천재나 풍화작용 등 자연 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적인 변화(도로 건설 등) 가능성이 없는 곳.
- 나. 매몰, 발굴작업이 용이하고 흔적이 생기지 않는 지점⁴⁹⁾
- 다. 군·경 등의 경계감시나 왕래가 잦더라도 일정시점 이후(예: 일몰 이후 등)에는 인적이 거의 없는 지점
- 라. 안내원과 공작원, 상부선, 하부선 등 간첩 쌍방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며 특히 안내원의 침투가 용이한 지점

2. 「드보크」設置容疑 地域

- 가. 독립묘 등 표적이 뚜렷한 위치에 있는 묘소의 묘비, 상석, 망주석⁵⁰⁾, 산지기, 나무주변 등
- 나. 송덕비, 자연 보존물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보전성을 갖는 비석, 고목 등
- 다. 사찰, 암자, 기타 고적지, 사적지 부근에 존재하는 뚜렷한 자연물체 부근
- 라. 성황당, 장승 및 일반 주민들이 훼손 및 접촉을 금기시하는 물체
- 마. 고압선 철탑, 일련번호가 있는 전신주 또는 독립 전신주

49) '92년 8월 검거된 김낙중은 팔당댐 주변 야산에 드보크를 설치하였다.

50) '95년 10월 생포간첩 김동식은 대전, 이천 등 묘소 망주석 주변에 6개의 드보크를 설치하였다.

바. 기타 교량, 교각, 산 정상, 독립수, 바위⁵¹⁾, 해안 돌출부, 성문⁵²⁾, 성곽, 유원지, 공원, 약수터 등

* 안내원은 침투·복귀가 용이한 지역(해안선 4Km 이내 인근야산의 묘지, 고지정상 삼각점, 폐가옥 등)을 선정하고 고정간첩, 공작원은 합법신분 생취상태에서 접근·이탈 용이 지역을 선정(유적지, 사찰, 명승고적 등지의 약정지점)

第3節 「드보크」設置·運用方法

1. 埋設原則

- 가. 드보크 설치시는 일반적으로 목표물의 끝 부분이나 가운데 모서리 지점을 선택하나 지점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향을 약정⁵³⁾
- 나. 깊이는 30cm정도로 하고 탐색침으로 찔려도 쉽게 감지되지 않도록 돌로 덮은 후 10cm 이상 흙을 덮어 매몰
 - 수직으로 판 후 다시 좌, 우측으로 파들어 가서 은닉하는 경우도 있음.
- 다. 전달 대상물의 변질방지, 장기간 보존을 위해 철저한 방수처리
 - 고무풍선, 비닐, 기름종이 등으로 포장한 다음 탄약통, 병, 깡통, 도시락 등에 넣어 매몰
- 라. 대상물 매몰 후 사소한 흔적도 남지 않도록 지표면을 원상복구한 후 주변 환경과 동일하게 위장
 - 파낸 흙을 운반할 비닐, 보자기 등을 미리 소지

51) '92년 8월 검거된 간첩 심금섭은 제주시 서귀포 해안 바위 밑에 드보크를 설치하였다.

52) '95년 10월 검거된 김동식은 청주 상당산성 남문 좌측 모서리에 드보크를 설치하였다.

53) 예를들면, 묘비 후면 중심 직하(전·후·좌·우)나, 성벽 축대 우측 모서리, 독립수 남쪽 직하 등에 사전 약속하여 매설한다.

2. 認識表示

매설지점 위에는 주변환경에 어색하지 않게 주먹만한 돌을 놓거나 나뭇가지 등을 꽂아 매설 위치를 표시

* 설치자가 드보크 약도를 작성하거나 사진 촬영 후 다른 연락선 또는 무전으로 발굴자에게 전달

3. 運用方法

가. 인적왕래가 없는 시간에 송곳 등 예리한 강철막대기로 탐지하여 표면위장(잔디, 나뭇잎 등)을 제거한 다음 돌 덮개를 치우고 기름종이를 벗긴 다음 공작물품을 접수

나. 발굴 후 원상 복구시키고 자연 표식물 제거 후 안전지대로 이탈하여 대북 무전보고

* 드보크는 선정, 운용의 어려움으로 동일 장소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비트랩이나 장애물 등을 통상 설치하지 않음.

第4節 「드보크」搜索·發掘要領

1. 容疑 對象地域 選定

가. 지역별로 간첩침투로, 빨치산 근거지 등 과거 좌익사건 활동지역을 1차 대상으로 하되 지역 특성과 현안에 맞추어 대상지역을 선정

(1) 해안선 일대 : 간첩침투 해안, 침투 예상지 주변의 무인도·해안 시설물·야산·독립가옥·암자·바위 등

(2) 내륙·도심지역 : 유명 묘소·성곽·비석 등 뚜렷한 표식물이 있고 등산 관광객 위장시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

- 나. 각 지역별로 과거 관내 남파간첩, 고정간첩 사건에서 등장한 드보크 지점을
분석·검토 후 대상지 선정에 참고

2. 搜索·發掘 要領

- 가. 남파간첩의 입장에서 매물·발굴에 따른 예상 소요시간과 그에 따른 주변
유동인구 유무 등을 감안, 매물지점 탐색
- 나. 용의지점이 선정되면 굴착에 앞서 뗏장의 색깔, 주변나무줄기의 의도적
흔적 유무, 눈에 잘 띄지 않는 표식여부 등 주변상황을 관찰
- 다. 삽 등 굴설 장비 이외 금속 탐지기, 탐색봉(침) 등 가용장비를 사전 확보
후 수색
- 라. 매설 정후 발견, 굴설시 드보크로 확인되었을 때 감시 거점 설치, 차후
역용공작 여건 조성 등에 대비 파낸 흔적이 남지 않도록 작업
※ 굴설지점 옆에 대형 비닐을 깐 후 파낸 흙을 담았다가 되묻는 완벽한
흔적 처리에 주력
- 마. 드보크 발굴 성공시를 대비, 비디오·사진카메라 등 채증 장비 험시 휴대
※ 채증시는 발굴 전 상태와 발굴작업, 발굴 후 복구상태 등으로 구분 촬영
- 바. 통상적으로는 드보크에 부비트랩(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않으나 수류탄
등 폭발물 매설 경우를 감안,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유의
- 사. 드보크 발굴에 성공한 경우 그래도 철수하지 말고 인근에 또 다른 드보크가
있는지 정밀 수색함과 동시, 향후 감시거점 설치를 대비 주변약도 및
은폐물 조사 등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第6章 安全業務

第1節 保安觀察法

I. 保安觀察處分의 要件

1. 意義

특정범죄(반국가사범)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벌과는 다른
의미의 제재를 과함으로써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

2. 目的

특정범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견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행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우리의
제1차적 중대 문제인 국가안보에 有備無患的 태세를 견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保安觀察의 法的根據

- 가. 보안관찰법(법률 제2769호, '75. 7. 16. 공포) 개정법률 제4132호('89. 6. 16),
제4396호('91. 11. 22)
- 나. 보안관찰법시행령(대통령령 제7696호 '78. 7. 16. 공포) 개정대통령령
제12807호('89. 9. 11)
- 다. 보안관찰법시행규칙(법무부령 제191호 '78. 7. 21. 공포) 개정법무부령
제328호('89. 9. 11)

4. 保安觀察 處分對象者

가. 요건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⁵⁴⁾

나. 보안관찰해당범죄⁵⁵⁾

(1) 형법 중 보안관찰해당범죄 형법 제2편 1장, 2장의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서

(가) 내란목적 살인죄(제88조)

(나) 외환유치죄(제92조)

(다) 여적죄(제93조)

(라) 모병이적죄(제94조)

(마)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바)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사)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아) 간첩죄(제98조)

(자) 상기 범죄의 미수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행위(제89조, 제90조, 제100조, 제101조) 등이며, 형법상 동편 범죄 중에서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 계약불이행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서 제외된다.

(2) 군형법 중 보안관찰해당범죄 군형법에서 규정된 보안관찰해당범죄 역시 형법에서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가) 반란죄(제5조)

(나) 반란목적군용물탈취제(제6조)

(다) 이적목적반란불보고죄(제9조 2항)

(라) 군대및군용시설제공죄(제11조)

(마) 군용시설등파괴죄(제12조)

(바) 간첩죄(제13조)

(사) 일반이적죄(제14조)

(아) 상기 범죄의 미수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행위(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등이며, 단순반란불보고죄는 제외된다.

(3) 국가보안법 중 보안관찰해당범죄

(가) 목적수행죄(제4조)

(나) 자진지원, 금품수수(제5조, 제4조 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다) 잠입, 탈출(제6조)

(라) 편의제공(제9조 제1항, 3항, 4항) 등이며,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찬양고무죄(제7조), 회합통신(제8조), 불고지죄(제10조)는 제외된다.

다. 신고⁵⁶⁾

(1) 대상자신고 :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주거예정지 등 기타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주거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2) 출소사실신고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주거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거소제공 대상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변동사항신고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 경찰서장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여 거소를 제공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 결정된 거소를 주거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

54) 보안관찰법 제3조

55) 보안관찰법 제2조

56) 보안관찰법 제6조

- (4) 전 (1)(2)(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이를 신고서접수부(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5) 교도소 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주거지 관할경찰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동태보고

- (1)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2월에 1회 이상 관찰하여 특이동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⁵⁷⁾
- (가) 죄를 범한 때
 - (나) 사망한 때
 - (다)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 (라)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 (마) 국외여행을 할 때
 - (바)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保安觀察處分

가. 요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⁵⁸⁾

57)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

58) 보안관찰법 제4조 1항

나. 기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경신할 수 있다.⁵⁹⁾

다. 효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재범의 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⁶⁰⁾

라. 보안관찰

- (1)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 업무는 관할파출소와 경찰서 보안관찰 업무 담당자 공동책임으로 2종 복합관찰을 실시한다.
- (2)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3)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동향관찰은 개인별 특수성에 의한 착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간접적으로 내사하여야 한다.
- (4)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피보안관찰자의 주소지와 직장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은 직장소재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경찰업무에 대하여 주소지 또는 직장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은 공동책임을 진다.

마. 신고

- (1) 피보안관찰자 신고의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주거지를 관할하는 파출소의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소제공을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거주지로 신고하여야 한다.⁶¹⁾

59) 보안관찰법 제5조

60) 보안관찰법 제4조 제2항

61) 보안관찰법 제18조

- (2) 정기신고의무 :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 이상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사항을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 (나)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그 시기, 장소 및 내용
 - (다) 3월간에 행한 시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라)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제시한 사항
- (3) 변동사항신고의무 : 피보안관찰자는 ①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①항의 신고를 한 후 거소를 제공받거나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수시신고의무 : 피보안관찰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기타 사항을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를 제공받을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주거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 (5) 파출소장과 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수시 및 정기동태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회피, 거부할 때에는 그 상황을 보안관찰부에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추후 사법적 처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 (6) 관할경찰서장은 ①항~④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7) 신고서를 접수한 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8) 관할경찰서장은 주거지 이전, 국외여행, 국내여행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시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10)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죄를 범한 때
 - (나)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회합·통신할 때
 - (다) 소재불명된 때
 - (라) 사망한 때
 - (마)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바. 지도⁶²⁾

- (1)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가)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 하는 것.
 - (나)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 (다)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2)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 통신을 금지하는 것.
 - (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 (다)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62) 보안관찰법 제19조

사. 보호⁶³⁾

- (1)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주거 또는 취업을 알선하는 것.
 - (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다) 환경을 개선하는 것.
 - (라)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 (2)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거소제공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4) 법무부장관은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3월 이내에 거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 응급구호⁶⁴⁾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피보안관찰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한다.⁶⁵⁾

63) 보안관찰법 제20조

64) 보안관찰법 제21조

65)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0조

자. 경고⁶⁶⁾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차. 동태보고 등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죄를 범한 때
- (2) 보안관찰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 (3) 일정한 주거가 없게된 때
- (4)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 (5) 사망한 때
-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한 때
- (7)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또는 집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
- (8)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행불되거나 도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용하여 최단시일 내에 소재 탐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카. 전출입(보안관찰처분대상자, 피보안관찰처분자)

- (1) 경찰서장은 군입대 등 타 정보수사기관의 관할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상자의 관계기록 일체를 지방경찰청을 거쳐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타 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전출시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소재확인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경찰서에서는 지체없이 소재를 확인, 회보하여야 한다.

66) 보안관찰법 제22조

- (3) 타 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상자에 대한 관계기록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 (4) 대상자의 소재가 확인되었거나 전입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의 미전입, 거소의 일시성, 이전의 빈번, 무연고 등을 이유로 확인불능회보를 하거나 회보지연 또는 거주확인을 회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 인하여 대상자 행불, 도주 등 보안관찰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전입지 경찰서장이 그 책임을 진다.

II. 保安觀察處分의 決定節次

1. 對象者の 申告

가. 교도소 내 신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 예정지 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해야하며,⁶⁷⁾ 교도소 등의 장은 대상자 신고서를 출소예정일 2월 전까지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거주 예정지 관찰검사 및 경찰서장, 국가정보원장에게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⁶⁸⁾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은 그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⁶⁹⁾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대상자의 출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⁷⁰⁾

나. 출소 후 신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내에 거주예정지 관찰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⁷¹⁾

67)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68)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69)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70)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대상자로부터 출소사실 신고서를 접수한 관찰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⁷²⁾

다. 미신고자 처리

(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 경우 거주예정지 관찰검사는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계속 신고를 거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함과 동시에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여야 한다.⁷³⁾

(2) 출소사실 신고 또는 변동사항 신고 불이행의 경우

(가) 거주예정지 관찰경찰서장의 조치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출소통보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7일 이내에 출소사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⁷⁴⁾

(나) 검사의 조치

관찰검사는 대상자에게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계속 신고를 거부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함과 동시에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⁷⁵⁾

라. 비대상자 및 사망시의 처리

(1) 비대상자의 경우

관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신고한 자 중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아닌 자(비대상자라 함)라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요령에 의해 처리한 후, 판결문, 행집행지휘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71)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72)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73)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74)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75)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2) 사망한 경우

신고서철의 색인목록 비교란에 '사망'이라고 주서한 후 신고서를 빼내어 폐기 한다.

2. 保安觀察處分 事案의 調査**가. 사안인지 절차**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사안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의 사안인지승인 또는 사안인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나. 사안조사 절차**(1) 사안조사의 개념**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여 것을 의미하는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안조사를 할 수 있다.⁷⁶⁾

(2) 조사시 유의사항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소·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4)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76) 보안관찰법 제9조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⁷⁷⁾

(5)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용의자에 대한 조사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의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하여 조사하되,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선고법원 대응 검찰청과 복역 교도소 등에 대한 조회, 공안전과 조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판결문, 행형기록, 전과관계 등 재범위험성 유무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야 한다.

3. 保安觀察處分 事案의 送致**가. 사안기록 작성 및 편철**

송치서류는 형사사건 기록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되, 다만 의견서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하여야 한다.⁷⁸⁾

나. 송치방법

사법경찰관리는 조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⁷⁹⁾

그런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사안은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조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사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관서장의 명의로 각각 송치하여야 한다.⁸⁰⁾

다. 송치 이후의 조사 등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 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⁸¹⁾

77)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9조

78)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79)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7조

80) 경찰청 예규 제8조 제1항

81)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0조

4. 保安觀察處分의 請求

가. 검사의 청구 및 불청구

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⁸²⁾

나. 청구서의 기재사항

보안관찰처분 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인적사항, 청구의 원인되는 사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8조 2항). 여기서 청구의 원인 되는 사실이란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주된 내용으로 기재한다.

다. 증명자료의 첨부

검사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사안조사기록, 주민등록표 등본, 범죄경력조회서, 행형기록 사본,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등본,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된다.⁸³⁾

라. 절차

(1) 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가) 피청구자에 대한 통보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법 제8조 4항), 송달은 피청구자로부터 수령서를 받고 직접 교부하거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송달절차를 밟아 송달하고, '우편송달보고서'를 사안기록에 편철한다.⁸⁴⁾

82)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83)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2조

84)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8조

(나) 송치관서의 장에 대한 통보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⁸⁵⁾

5. 保安觀察處分의 決定

가. 법무부장관의 심사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하는데, 이 경우 청구사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⁸⁶⁾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심사 후 지체없이 보안관찰심의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⁸⁷⁾

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1) 구성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의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⁸⁸⁾

(2) 기능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⁸⁹⁾

(가) 보안관찰처분 결정 또는 보안관찰처분 청구기각 결정

(나)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다) 보안관찰처분 취소결정 또는 기간의 갱신 결정

85)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4조

86) 보안관찰법 제10조

87)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7조

88) 보안관찰법 제12조 제2항, 3항

89) 보안관찰법 제12조 제9항

(3) 절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13조 2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의결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⁹⁰⁾

다. 결정

(1) 결정권자

법무부장관이 결정권자이며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하는데, 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의결보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유리한 결정은 할 수 있다.⁹¹⁾

(2) 결정서

보안관찰처분 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 성명과 피 청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거, 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⁹²⁾

(3) 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다만 검사의 면제결정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⁹³⁾

6. 保安觀察處分의 期間更新

가. 개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안관찰처분을 한 후 그 기간만료 전에

90)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91) 보안관찰법 제14조 제2항

92)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0조

9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1조

보안관찰처분의 효력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의미하는데, 갱신된 기간도 2년이고, 갱신헛수에는 제한이 없다.⁹⁴⁾

나. 절차

(1) 검사의 조치

검사는 기간만료 3월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 보안관찰처분 사안기록(특히 정기 또는 수시 동태보고서) 등 관계자료를 종합하여 기간갱신 필요 유무를 판단한다.⁹⁵⁾

(2) 경찰서장은 처분만료 3월 전까지 동태조사서를 4부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경찰청, 경찰청에 1부씩 송부하는데, 기간갱신사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용의자를 조사하는 등 기간갱신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⁹⁶⁾

다. 기간갱신의 청구

늦어도 보안관찰처분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기간갱신에 관한 청구원인사실 및 의견서 기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의 예에 따른다.

라. 기간갱신의 불청구

검사는 기간갱신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 갱신 불청구승인 신청기각의 경우를 예상하여 보안관찰처분 기간만료 3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⁹⁷⁾

94) 보안관찰법 제5조

95)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3조

96) 경찰청 예규 제11조

97)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III. 保安觀察處分의 執行

1. 執行概要

가. 檢사의 지휘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가 서면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지휘하여 실시한다.⁹⁸⁾

나. 등본의 교부

관할 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하고 그때부터 집행이 개시된다.

피보안관찰자가 결정서 등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결정서 등본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결정서 내용을 구두로 고지하였다는 취지 등 고지방법, 고지일시 및 장소, 고지내용, 고지한 자의 직급, 성명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안기록에 편철해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지일이 집행 기간일이 된다.⁹⁹⁾

2. 保安觀察處分의 執行中止

가. 집행중지 제도의 의의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 제도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되어 사실상 보안관찰을 할 수 없는데도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진행되어 처분기간이 도과되는 모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나. 집행중지 결정의 절차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집행중지를 신청한다. 이때 검사는 집행중지 결정 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¹⁰⁰⁾

98) 보안관찰법 제17조 제1항, 2항

99)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0조

100)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조

다. 집행중지 결정의 효과

집행중지 결정일로부터 집행중지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데, 보안관찰처분의 재집행을 위하여 검사는 집행중지 결정 취소와 동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¹⁰¹⁾

IV. 保安觀察의 實施

1. 觀察

가. 관할경찰서장의 관찰의무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사회복귀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¹⁰²⁾

나. 관찰의 방법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관찰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¹⁰³⁾

다. 관찰의 내용

피보안관찰자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지시사항,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경고사항 등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¹⁰⁴⁾

2. 指導

가. 지도의 방법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

101)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10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10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04) 보안관찰법 제19조, 시행령 제25조, 제31조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⁰⁵⁾

나. 재범방지 조치

(1) 조치내용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는 불포함)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처벌유무 불요)와의 회합·통신 금지
- (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 (다)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한 특정장소에의 출석요구

(2) 방법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데,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¹⁰⁶⁾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재범방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¹⁰⁷⁾

3. 警告

가. 의의

피보안관찰자의 의무위반 또는 그 위험성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경고

105)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106)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4항

107) 보안관찰법 제27조 제3항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하는 것이다.

나. 방법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¹⁰⁸⁾

4. 動態報告

가. 정기동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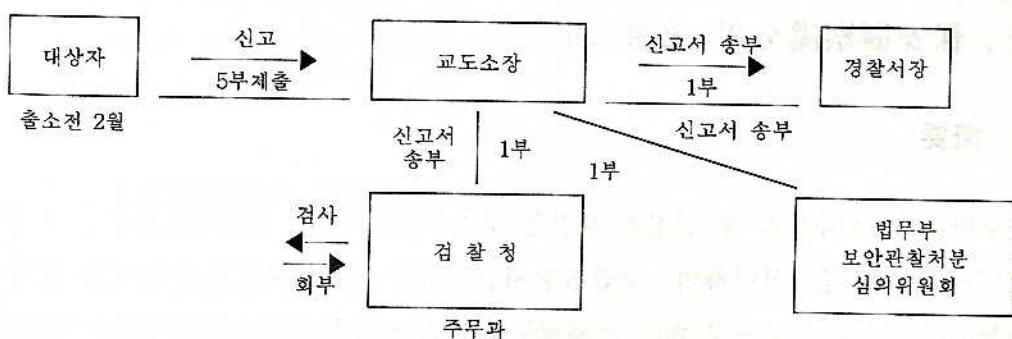
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피보안관찰자의 주요 동태, 신고사항 변동여부, 재범방지조치, 경고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⁰⁹⁾

나. 수시동태 보고

피보안관찰자가 죄를 범하거나 사망한 때 등 특이동향 발생시 수시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¹⁰⁾

5. 被保安觀察者の 申告義務

신고절차(法 제6조 제1항, 施行令 제6조 참조)



108)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1조

109)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10)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 최초신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피보안관찰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¹¹¹⁾

나. 정기신고

피보안관찰자는 결정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¹¹²⁾

다. 수시신고

(1) 변동사항 신고

피보안관찰자는 최초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¹¹³⁾

(2) 주거지 이전, 여행신고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10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거지 이전 또는 국내여행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¹¹⁴⁾

V. 保安觀察處分의 免除決定

1. 概要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면제 신청이나 검사가 직관으로 하는 면제청구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면제결정을 한다.

111) 보안관찰법 제18조 제1항

112) 보안관찰법 제18조 제2항

113) 보안관찰법 제18조 제3항

114)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2. 保安觀察處分의 免除申請

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¹¹⁵⁾

나. 관할 경찰서장의 처리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36조 1항), 20일 이내에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한다.¹¹⁶⁾

다. 검사의 처리

검사는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조사를 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36조 2항),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¹¹⁷⁾

라. 법무부장관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위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내에 보안관찰처분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¹¹⁸⁾

3. 保安觀察處分 免除決定 請求

검사는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11조 3항),

115)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16)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17)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18)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5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시 보안관찰처분 사안인지서의 예에 의하여 '보안 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보안 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사안 인지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찰 검사의 승인을 얻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4. 免除決定의 效果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5. 免除決定 取消

검사는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VI. 其他

1.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保護

가. 보호

피보안관찰자의 자조노력에 따른 개선과 자립을 위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의 보호조치를 의미하는데, 주거 또는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제공, 환경개선 등의 방법이 있다.¹¹⁹⁾

나. 응급구호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 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구호조치를 의미하는데(법 제21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¹²⁰⁾

119) 보안관찰법 제20조

120)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0조

다. 거소제공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여 국가적 보호가 요청되는 자에 대하여 거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¹²¹⁾

2. 行政訴訟

가. 의의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은 어디까지나 그 형식이 행정 관청에 의한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동법은 그 구제절차에 관하여서도 행정 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요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의 제기기간은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면제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¹²²⁾

3. 罰則

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도주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신고시 거주예정지·주거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¹²³⁾

121)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6조

122) 보안관찰법 제23조

123) 보안관찰법 제27조 제1항,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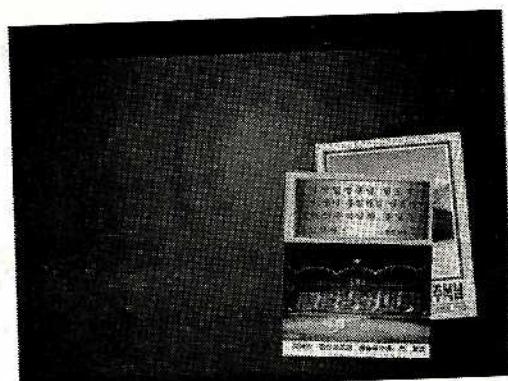
나. 보안관찰처분 업무종사 공무원

직무수행거부·유기 또는 허위보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누설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¹²⁴⁾

다. 기타 관련자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거소제공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¹²⁵⁾

第2節 北韓不穩宣傳物과 不穩油印物



북한의 불온선전물(블라)

1. 北韓不穩宣傳物

가. 의의

북한불온선전물이란 북한이 고무풍선을 이용하여 공중 살포하는 전단 등 각종 대남모략 비방 선전물로서 북한불온선전물 수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불온선전물을 조기수거 유언비어의 원천봉쇄 및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124) 보안관찰법 제27조 제5항, 7항

125) 보안관찰법 제27조 제4항, 6항

나. 불온선전물의 종류

- (1) 전단 : 주장, 선동, 선전 등의 글귀를 인쇄하여 돌리는 쪽지이다.
- (2) 책자 : 사람의 사상인 감정을 나타낸 글이나 그림을 종이에 인쇄하거나 표현하여 그 여러 장을 한 묶음으로 꾸맨 물건을 통틀어 말한다.
- (3) 화보 : 여러 가지 선전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도하는 인쇄물 또는 주로 그림,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을 말한다.

다. 수거실시 주관

경찰서 주관으로 수거한다.

라. 수거실시 요령

- (1) 불온선전물의 수거 홍보활동 강화
 - (가) 강연회, 좌담회 등을 활용 수거홍보 실시
 - (나) 전단, 표어 등 수거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 (다) TV, 신문, 유선방송 등 매스컴을 활용 홍보 실시
- (2) 사찰, 등산로, 유원지 입구에 수거홍보 시설물 설치
- (3) 불온선전물 수거함 설치
 - (가) 다량 낙하지역의 등산로, 유원지 입구, 각급 학교에 설치
 - (나) 제조사 및 순찰시 수거함에서 수거
- (4) 북서계절풍이 많이 부는 4월과 10월에 특별수거기간 설정 수거

2. 不穩油印物

가. 불온유인물의 개념

공산주의 체제 등을 지지, 미화, 찬양, 고무하고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체제를 부정, 파괴를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사회안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제작 배포, 소지, 운반 등을 하는 신문, 화보, 팜플렛, 프랑카드, 블라 등을 총칭함.

나. 유인물 분류

(1) 성향별

- (가) 이적성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전, 동조하거나 국가반란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
- (나) 친북용공성 :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기층 민주정부 (사회주의 정부) 수립을 지지, 미화, 찬양, 고무하는 내용
- (다) 반정부성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자본주의 체제의 기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제도를 부정 또는 변혁을 주장하는 내용

(2) 종류별

- (가) 유인물 : 다양한 크기의 종이에 인쇄, 워드프로세서, 필경 등으로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작
- (나) 현수막 : 광목, 나일론 등의 바탕에 페인트, 테이프 등으로 구호 또는 주의, 주장을 게재하여 육상 등에 게시
- (다) 대자보 : 전지에 매직 등으로 주의, 주장을 게재하여 게시판(대학), 담벽 등에 부착
- (라) 깃발 : 각종 천을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제작, 구호, 단체 명의 등을 표시하여 각종 시위·집회시 선두, 중심에 위치

(3) 분야별

학원, 정치, 사회, 문화, 노동, 기타 등

3. 不穩油印物 制作, 所持 等에 對한 適用 法規

가. 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

나.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 첨부)

(제1조 제16호)(오물방치)

다. 광고물관리법(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4. 不穩油印物 發生報告 및 連行報告 要領

가. 불온유인물 발생보고

- (1) 발생일시, 장소
- (2) 유인물형태(제목, 명의, 발행인, 규격)
- (3) 입수경위
- (4) 주요내용
- (5) 분석
- (6) 조치사항

나. 불온유인물 소지자 연행보고

- (1) 인적사항
- (2) 전과사항
- (3) 학력, 경력
- (4) 가족관계
- (5) 재산관계
- (6) 관련 행위
- (7) 압수품(소지품, 자택수사 여부)
- (8) 연행경위
- (9) 조치사항

다. 연행자 조치 결과보고

- (1) 인적사항
- (2) 관련혐의
- (3) 조사내용
- (4) 담당검사(검사지휘 내용 등)

- (5) 신병조치사항(구속, 불구속, 훈방 등)

第3節 理念啓導 活動

1. 目的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제고, 새시대 통일안보관의 정립

2. 理念啓導 活動

가. 대인계도활동

- (1) 반상회, 각종 행사, 집회 및 좌담회 참석 계도
- (2) 계도순회반 편성으로 강연 및 영화, 사진전시회 등
- (3)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종사자 등 계도
- (4) 벽지, 오지, 마을, 취약지 등

나. 계도 시설물 설치 및 유인물 제작 배포

- (1) 입간판, 선전물 및 유인물 제작 배포
- (2) 이념계도 유인물 발송

3. 理念啓導要員 教育

가. 교육대상

- (1) 주민신고 조직요원
- (2) 지역 및 직장신고 계도요원
- (3) 특수직업 종사자(해안도서 주민, 내륙교통 종사자, 기타)
- (4) 전 경찰관

나. 교육방법

- (1) 경찰서 단위로 민방위 부서와 협조, 민방위 소집시 병행실시
- (2) 계도요원에 대하여 지방청별로 1박2일 집체교육
- (3) 전 경찰관 통일안보 특별교육
- (4) 특수직업종사자에 대한 주무부서 협조 교양 실시

第7章 共產主義

第1節 世界共產主義 變遷史

시대구분	주요사건
공산주의 태동	1847년 런던에서 일단의 독일인 망명자들에 의하여 공산동맹이 결성됨.
마르크시즘 등장	1848년 마르크스는 앵겔스와 공동으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여 과학적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공개선언하고 공산주의가 변혁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의 사상임을 표방함.
공산주의 정당의 등장	1889년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결성됨.
레닌시대	1917년 레닌은 전쟁에 지친 병사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민을 동맹군으로 이용하여 유럽에서도 경제발전이 가장 뒤떨어진 러시아에서 지상천국의 건설을 약속하는 혁명을 일으키고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정권을 수립
스탈린 시대	1924년 레닌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스탈린은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폴란드, 발트 3국, 동독 등 동유럽 제국을 점령, 위성국으로 지배
네오맑시즘	1945년 공산국가가 아닌 지역에서 등장한 이론으로서 레닌의 계급투쟁이론 같은 무반성적이고 비철학적인 경향을 탈피하고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키고자 함.
마오이즘	모든 현상을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같지만 인간의 구체적 능력과 역사에 있어서의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구별됨.

시대구분	주요사건
반소운동	1950년 초반 스탈린 사후 소련의 지배에 항거하는 폴란드, 평가리, 동독 등에서 반소운동이 발생하고 소련은 유화책으로 바르샤바조약을 통하여 위성국들의 '주권존중 및 내정불간섭을 인정'
뉴레프트운동	1960~70년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뉴레프트운동,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등장하였으며, 뉴레프트운동은 체계화된 이론이나 공인된 전략전술, 조직화된 세력이 없으며, 기존의 공산당과 사회당을 구좌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공산주의의 이론과 행동에서 벗어나 마르크스주의의 실현을 위한 과격행동을 주창하였고, 반소운동, 중소이념분쟁에 따른 소련의 권위실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에 동조하면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 의식이 퇴색해감에 따라 생겨남.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신학이론과 공산주의 이론을 변용시켜, 남미제국의 특수상황인 개발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으로서 빈곤한 국가들의 저개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목표로, 서구자본주의로부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예속을 놓아 신식민지를 이루고 있으므로 교회는 이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폭력을 수반하는 혁명을 통해 가능하다고 봄.
유로코뮤니즘	1970년 중반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 세 나라의 공산당에 의하여 주창된 이론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모순점 등장으로 기성 공산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자 독자적 노선, 프롤레타리아독재 폐기와 민주주의 가치의 중시 등을 표방하여 고전적 공산주의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시대구분	주요사건
고르바초프 등장	1985년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강령을 환상적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페레스크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표방하였다.
소련·동유럽공산국가의 민주화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에는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인정한 이후 1989~1990년 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1991년에는 러시아연방이 공산당 독재를 각각 청산하고 민주화를 하였다.

第2節 共產主義의 哲學理論

1. 헤겔의 辨證法¹²⁶⁾

헤겔은 변증법을 논리적 개념의 발전형식, 사고의 발전형식이라고 이해하여 이것을 자연과 사상의 역사적 발전에 적용시켜 해석했다. 변증법에는 헤겔이 정식화한 세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마르크스, 엥겔스를 거쳐 레닌, 스탈린에게 계승되어 변증법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가. 양의 질화 및 그 역의 법칙

모든 사물의 운동을 원환(圓環)운동으로 이해하지 않고 부단한 발전의 운동으로 파악하여 일정한 양과 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변화 및 통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및 통일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양적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거쳐 질적 변화로 이행하게 된다.

물질에 있어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고전적 예증으로서 엥겔스의 이론 바 물은 정상기압에 있어서는 액체이지만, 온도가 내려가서 섭씨 0도에

126) 변증법이란 희랍의 Dialogos(대화 또는 회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논증하는 방법 즉, 토론에서 상대방의 판단 속에 들어 있는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 할 수 있는 화술을 뜻한다.

이르면 물의 응집상태는 돌연히 질적으로 변화하여 얼음으로 변하고, 온도가 올라가서 섭씨 100도에 이르면 돌연 수증기로 변한다는 말이 곧잘 인용되고 있다.

이 법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은 액체가 갑자기 기체로 변하듯이 인류 사회의 발전도 돌연한 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약을 레닌 주의자들은 혁명이라 부르고, 사회는 반드시 혁명을 거쳐야만 발전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나. 대립물 통일의 법칙¹²⁷⁾

자연, 사회, 정신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상은 그 자체 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모순이 처음에는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대립하고 상극하여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나며, 바로 이 투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논리이다.

다. 부정의 부정 법칙¹²⁸⁾

모든 사물의 발전은 낡은 것의 부정을 통하여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양의 질화 법칙에 의해 새로운 질에로의 변화는 최초의 질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고, 이 새로운 질은 다시 발전·진행의 출발점이 되고 발전이 진행됨으로써 다시금 그 새로운 질은 부정되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최초의 부정은 새로운 부정에 의해 지양된다.

2. 唯物論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사상으로 공산주의에서는 인간사회의 근본을 경제 문제로 보고 경제문제는 물질 중심으로 본다.

127) 레닌은 대립물의 통일을 객관적 세계의 법칙이라고 주장하고 그 예로서 수학에서는 +와 -, 역학에서는 작용과 반작용, 사회과학에서는 계급투쟁 따위를 들고, 엥겔스는 자석과 연충(蠶蟲)을 들어 그 예를 설명하였다.

128) 엥겔스는 부정의 부정 법칙을 보리의 예를 들어, 보리가 성장하여 결실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리알이 소멸되고 실물로서 짹트는 것을 보리알의 부정으로 설명하고, 이 짹이 성장 결실하여 마침내 식물인 보리짚이 말라 죽는 것을 보리짚의 부정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여 부정의 결과로서 수십배의 보리알을 얻는다고 풀이했다.

가. 과학만능주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며, 물질을 자연과학적인 물질로 해석하고, 인간 사회를 자연과학 법칙으로 이해한다.

나. 감각론

물질세계만이 실존한다는 유물론은 감각만을 인식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감각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정신은 감각을 거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한다.

다. 결정론

모든 사물은 그에 선행하는 물질적 조건과 물질적 법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라. 유물론적 인간관

유물론적 인간관은 유물론에 기초하여 만물의 근본을 물질로 보고 인간의 정신 세계를 부정하였으며 인간의 정신은 물질에서 파생되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집단농장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적 사고는 유물론적 인간관에 기초한 인간의 수단적 가치화에 기인한다.

3. 唯物史觀

가. 의의

유물론을 인간사회현상에 적용시켜 인간사회를 움직이는 근원은 물질. 즉, 경제라고 주장하고 역사를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유물사관이다. 따라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비롯되므로 우리들이 본래 맞이할 사회는 우리들이 욕구한 의식이나 관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생산양식(생산력¹²⁹⁾+생산관계¹³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129) 생산력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의 생산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즉,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간의 노동력으로 생산기술, 생산용구, 생산수단 등을 말하며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발전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130) 생산관계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용자층과 피고용자 층간의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나. 논리의 구성

(1) 생산양식 = 생산력 + 생산관계

여기서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체로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획득방식. 즉,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생산력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조응(照應)하면서 발전한다. 그러다가 생산관계가 주어진 자기의 시대를 다 살고 나면 생산력과의 사이에 모순이 생겨 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하게 되므로 모순의 투쟁이 발생한다. 이 모순의 투쟁은 새로운 생산양식의 단계로 이어지며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2)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의하면 원시공동사회가 정(正)의 개념에, 고대노예·중세 봉건·근대자본주의사회는 반(反)의 개념에, 사회(공산)주의사회는 합(合)의 개념에 해당된다.

(3) 사회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하부구조(사회적 토대)는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생산관계이고, 상부구조는 하부구조를 토대로 구성되는 정치·법률·철학·예술·종교 등의 제도와 사상을 말한다. 상부구조는 하부구조가 구성되면 하부구조를 보호하고, 하부구조가 소멸되면 상부구조도 소멸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하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발전에 조응하면서 발전한다고 한다.

(4) 계급투쟁론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원시공동사회때는 생산수단의 공유로 인해서 소유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착취와 지배자가 없었으나 생산수단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는 사회적 분화를 낳게 되었다고 마르크스는 보고 있다.

(5) 국가소멸론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소수의 자본가계급은 총, 칼 등 무기를 만들고 이를 운용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다수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도전을 막아내고 그들을 계속해서 노예 내지 임금 노동자로 생존케 한다는 논리이다.

第3節 共產主義 經濟理論

1. 勞動價值說

마르크스는 노동이야말로 모든 상품의 가치의 원인이요, 가치를 형성하는 실질이요,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설명한다. 즉, 어떤 상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이며 이 노동력의 결정이 곧 상품의 가치요, 따라서 한 상품의 가치가 크고 적은 것은 그것을 만드는데 소비된 노동력의 대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A, B 두 가지의 상품의 교환이 성립되는 것은 그 속에 각각 같은 양의 노동량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가치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평균노동에 의해 측정되며 이러한 노동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상품들이 교환된다는 것이 노동가치설이다.

2. 剩餘價值說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필수품을 얻는데 필요로 하는 노동을 필요 노동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초과하는 노동을 잉여노동이라고 정의했다. 필요 노동에 의해서 가치는 임금으로서 노동자에게 지불된다. 그러나 잉여노동이 생산한 가치, 즉, 잉여가치는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는 채, 자본가의 금고로 들어가 이윤의 원천이 된다. 이것이 바로 착취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윤이 오직 잉여가치로만 얻어진다는 전제 위에서 마르크스는 생산 과정에서 작용하는 자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즉, 불변자본과 가변 자본이 그것이다. 그는 생산요소 중에서 노동이외의 생산요소(기계, 도구, 원료 등)는 가치를 증식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제 값이치만큼 생산물에 이전되므로 생산수단을 구입하는데 쓰이는 자본을 불변자본이라 불렀다. 그리고 노동력

만큼은 생산과정에서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므로 노동임금에 충당되는 자본을 가변자본이라고 부른 것이다.

3. 資本主義 崩壞說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 내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며 이를 3대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 자본축적의 법칙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극심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본가도 자유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최소한도로 절감하여 이윤을 획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생산비를 낮추는데 노동자의 임금저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기계설비를 통한 생산형태를 취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대자본은 자본을 축적하는 데서 얻어진다.

이러한 자본축적은 불변자본 비율을 높여 자본가의 이윤하락을 가져올 뿐 아니라 새로운 기계설비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킨다. 이에 결국은 자본주의체제는 기업이윤의 소멸로 붕괴한다는 것이다.

나. 자본집중의 법칙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면, 자유경쟁 하에서는 각 생산부문간에 우열의 차가 심해지며 중·소자본은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패한 다음 몰락하여 그에 흡수된다. 자본이 소수집단에 집중됨에 따라 임금생활자 계급이 늘어난다. 즉, 자본의 집중은 대생산조직을 발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소자본은 몰락하고 대중의 노동계급화를 촉진한다고 본다.

다. 빈곤증대의 법칙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노동계급과 실업자가 늘어나며 그들의 빈곤 또한 끊임없이 증가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노동 계급은 마침내 무지, 빈곤, 고역, 노예 상태, 정신적 타락 등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 하에서 노동계급은

점점 단결을 굳게하여 드디어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혁명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경제의 연구로부터 혁명, 즉, 정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第4節 共產主義 政治理論

1. 暴力革命論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방법론으로 혁명론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압박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이런 혁명은 생산력의 발달, 즉, 생산력이 생산관계의 보조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하에서 혁명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어디서 그러한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공업국가, 즉, 선진자본주의 문명국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일으킬 것인가의 문제는 물론 서슴지 않고 프롤레타리아라고 대답한다.

2.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부르조아 제도의 폭력적 전복이 필요하지만 그냥 전복만 시켜 놓고 그대로 둔다면 새로운 사회가 결코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계급이 소멸하고 국가가 사멸하는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 LRRN가 전복된 다음, 우선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계급으로 높인 다음, 부르조아의 부활과 복수 및 그 잔재를 말끔히 근절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 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기이며, 이 기간에 세워지는 국가가 프롤레타리아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에 여전히 강압적인 기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는 결코 자유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참다운 자유가

왔을 때 이미 강압기구인 국가는 사멸한 이후가 된다.

그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규모와 방법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이를 둘러싸고 마르크스주의자들간에 논쟁이 적지 않았으나 이 과도기가 어떠한 경제적 변천과정을 거쳐 공산주의로 들어간다는 점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혀 놓았다. 즉, 그들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가 폭력혁명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탈취한 다음의 최초의 행위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이다. 이처럼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사회화(국유화, 집단화)하면 그 결과로 계급은 철폐되고, 이에 따라 억압기관으로서의 국가도 자연히 사멸하며, 자유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는 것이다.

第5節 國內 左傾勢力의 實態

1. 左翼事犯의 概念 및 特性

가. 좌익, 좌경, 용공의 개념

(1) 좌익

「좌익」이라 함은 급진주의적,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적 경향의 인물 또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우익」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특히 극좌적인 것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즉, 「좌익」이란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의 실현을 위해 폭력사용을 불사하고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상 경향을 포지하거나 행동방식을 보이는 정치인, 지식인 및 그들의 집단이나 사상, 운동세력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정치적 용어로서 「좌익」이란 용어의 역사적 연원은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비롯된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2개월 전인 1789년 5월에 소집된 절대왕정 하의 제1차 3부회의에서 제1신분인 승려와 제2신분인 귀족의 대표들이 왕의 우측에 앉고,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을 약칭하여 「좌익」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후 혁명이 일어나 3부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었을 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온건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레이앙파(Lee Feuilants)가 앉고, 좌측에는 공화정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자코방파(Lee Jacobins)가 앉게 되었으며, 좌측에 앉은 자코방파를 「좌익」이라 약칭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연원으로 인하여 기성질서의 타도와 급격한 사회변혁을 모색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세력을 「좌익」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좌익」이라 지칭되는 세력은 다음과 같은 인물이나 집단 등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직접 관련을 맺고 있거나 그들이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완연한 공산주의자들

둘째, 프롤레타리아혁명·사유재산권의 부정 및 공산당 독재(또는 인민독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

셋째,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포함한 공산국가들의 주의나 정책 및 상황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상황과 우방국가들과의 관계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주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나 집단 등을 말한다.

(2) 좌경

「좌경」이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광의로 해석하여 좌익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 예가 있으나 종래의 좌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하여 8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즉, 좌경이라는 용어는 80년대 초반부터 그 이전의 남로당 등 공산주의자들을 지칭해 온 “좌익”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진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편향된 세력들이 출현하였는데 당시 이들은 네오 맑시즘(Neo-Marxism), 유러 코뮤니즘(Euro-Communism), 뉴 레프트(New-Left),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을 바탕으로 삼았다.

이들은 80년대 중반까지 위와 같은 서구의 급진사조에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이들 사조를 “정통 맑스-레닌주의에서 이탈한 기회주의 잡사상”이라고 배척

하면서 “맑스-레닌주의” 또는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신봉하게 되었다.

(3) 용공

용공이라 함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나 자세를 말하며 그러한 용인태도를 주장 또는 행동으로써 외부로 표출하는 자를 용공분자라고 한다.

(4) 범률적용상

좌익과 좌경 및 용공은 이와 같이 개념상으로는 상대적 의미에서 구별되고 있으나 범률적용 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나. 좌익사범의 개념

좌익사범이라 함은 좌익의식을 포지한 자가 실제로 그러한 내심의 의식을 행동으로써 외부로 표출하고 그 표출행위가 국가보안법 등에 위반되는 자를 말한다.

다. 좌익사범의 특성

(1) 사안의 중대성

대공사건은 개개의 사건이 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국가안보와 사회안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발생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때가 많고 정치적 시비가 일어나거나 사회적 물의나 논란이 생길 경우도 있다.

또한 대공사건은 일단 발생한 이상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파급효과로 인해 제2, 제3의 대공사건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2) 확신범적 성향

대공사건의 피의자는 반체제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성향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식을 형성하여 평소부터 나름대로 이를 하나의 신념체계로 확립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실정법 위반도 정당시할 수 있다는 확

신을 가진 학생, 근로자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설정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범의라든가 행위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사상과 주관을 적극 주장하면서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 순화도 쉽지 않다.

(3) 조직적, 계획적 범행

대공사건은 형법 중 내란죄,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등 그 구성요건상 단체나 조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건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노동관계법위반들에 이르기까지 특정단체나 다수인의 집단적 의사결합에 그들이 설정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대부분인 점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일반형사사건과는 다른 조직적, 계획적 범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 다수인 관련범죄

대공사건 중에는 개개인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다수인이 관련된 범죄이다.

(5) 강한 저항성향 표출

대공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검사나 수사관, 심지어 판사에게까지 적개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원들이 신문과정에서 종종 뮤비권행사를 투쟁방법으로 이용하곤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반체제인사나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뮤비권행사, 재판거부 등을 투쟁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 國內 左翼勢力의 變遷

가. 일제하 좌익운동

(1) 좌의세력의 태동기(1920~1924)

우리나라에서 좌익운동이 태동한 것은 1920년대 무렵이다. 세계 최초의 사회

주의혁명인 1917년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연해주, 시베리아의 해외 한인들과 일본유학생들이 맑스주의를 학습하면서 소위 좌익운동이 발아하기 시작했다.

해외 한인인 이동휘는 연해주(러시아령)에서 1918년 5월 10일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는데, 이 당은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다. 후에 이동휘가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근거지를 상해로 옮겨 1920년 5월 <고려공산당>을 결성하는데 이를 이른 바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 명명한다.

또한 바이칼호 인근의 한인을 기반으로 하여 1919년 1월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를 결성하고, 이어 코민테른(국제공산당, 1919년 창설)의 지원아래 1919년 9월 <전러시아 한인공산당>을 결성하여 시베리아 일대의 조선인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 당은 후에 <통일고려공산당>을 결성하는데, 이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 명명한다.

한편 일본유학생들 사이엔 일본 내 맑스주의파의 영향에 따라 일부 유학생들이 좌의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초 재일 유학생의 맑스주의운동조직이라 할 수 있는 「조선고학생동우회」가 1920년 1월 25일 결성되었다. 이외에 흑도회(1921), 북성회(1923), 일월회(1925) 등의 사회주의 서클이 등장한다.

국내의 유입된 맑스주의는 주로 지식인, 청년학생,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퍼져 가면서 1921년에는 「서울청년회」, 1922년에는 「무산자동맹회」, 1923년에는 「신사상연구회」가 각각 결성되었고 「신사상연구회」는 1924년 맑스의 출생요일을 본따 「화요회」로 개칭되었으며 동경에서 조직된 「북성회」가 국내에 들어와 「북풍회」가 결성되었다.

(2) 조선공산당 결성 및 활동기(1925~1928)

1925년 서울에서 화요회가 주축이 되어 「조선공산당」(제1차)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박현영이 주도로 조선공산당의 청년전위대인 「고려공산청년회」가 창립되었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조직지도부가 4차에 걸쳐 검거되어 와해되는 중에도 지도부(1차~4차)를 재정비하며, 지하기관지를 발행하고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 및 각 지역에 당세포를 조직하였으며, 만주, 동경, 상해 등에 해외지도부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제4차)은 1928년 7~10월에 걸쳐 조직원 170여명이 겸거됨으로써 사실상 해체되기에 이른다.

(3)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기(1929~1945)

국내 공산주의세력들은 1929년부터 본격적인 당 재건운동에 착수했다. 1929년 2월 서울 상해파는 만주길림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동년 5월 엠엘(ML : 막스레닌의 영문 약칭)파는 <조선공산당 재조직 중앙간부회>를, 동년 11월 화요파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당 재건에 나섰다.

특히 화요파는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모스크바공산대학 출신의 공작원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투쟁했다.

이들은 전국 주요도시와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세포확산에 주력하며 각종 파업 등을 배후 조정하면서 전위당 재건에 힘썼으며 1935년 코민테른 제7차대회 이후에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활동하였으나 지역단위의 공산주의자 그룹의 조직 결성만 성사시켰을 뿐 결국 해방직전까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는데는 실패했다.

나. 해방직후 좌익운동

해방이 되자 일제치하에서 투옥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석방되었고,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지하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즉각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 결과 서울과의 정백, 이영파 화용회의 이승엽, 조동우, 상해파의 서중석 등이 주축이 되어 8월 15일 밤 서울 종로구 장안빌딩에서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다. 이를 ‘장안파 공산당’이라 칭한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공식적인 재건은 박현영의 주도로 콤그룹과 화요회 핵심인사들로 ‘조선공산당 재건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안파를 왜해시키고 1945년 9월 11일 ‘8월 테제’(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당 강령으로 하여 이루 어졌다.

해방직후 남한에는 박현영의 주도의 <조선공산당> 외에도 연안파의 지도를 받는 백남훈의 <조선신민당 남한지부>, 여운형 주도의 <조선인민당> 및 군소

그룹으로 좌익세력들이 분파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은 후에 우익진영에 대항하여 40여 개의 좌익단체들이 모여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좌파 통일전선 체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분파된 남한 내 공산주의세력들은 소련의 지시에 의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결집하여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약칭 : 북로당)을 결성하자 이에 대응하여 박현영 주도로 기존 3당세력을 흡수하여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노동당> (약칭 : 남로당)을 결성하게 된다. 1949년 6월 30일 남로당이 북로당과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을 결성하게 되면서 남북한 공산세력은 표면상 충결집 된다.

한편 1946년 5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합법적인 투쟁으로는 남한에서 공산정권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투쟁형태를 폭력투쟁으로 전환한다. 공산당이 당 자금 마련을 위해 위조지폐를 찍어낸 ‘조선정판사사건’으로 1946년 7월 공산당이 불법화되자 박현영은 소위 ‘신전술’을 발표하고 각종 테러, 방화, 총파업, 폭동사건을 야기시키며 비합법 폭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좌익세력들은 1946년 7월 국립서울대학교 종합화안 반대투쟁(일명 국대안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사건, 1948년 2·7폭동, 여순반란사건 등 무장폭력투쟁을 일으키고 지리산 등에서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며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의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다. 1950연대~1970연대 좌익운동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 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1950~53년)은 한국 내 좌익세력들을 일소시키는 큰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익세력들은 거의 괴멸되었고 일부 잔존세력들은 참복한 상태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굳건한 반공체제가 들어서고 국민들도 확고한 반공 이념으로 무장되어 좌익세력들은 거의 발호하지 못하였다.

1956년에는 조봉암 등 좌익경력자들이 결집하여 혁신정치를 표방하며 <진보당>을 창당하는데 이들의 활동 배후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도사리고 있었음이 1958년 소위 ‘진보당 서곤’에서 밝혀진 바 있다.

1960년대에는 한국전쟁의 결과 지하에 잠복해있던 좌익세력과 1950년대 말 재발아한 학원가의 좌경의식화세력 등이 합류하여 지하활동으로 좌익운동의 맥을 이어온 시기였다. 또한 북한의 집요한 대남공작의 결과 지하당이 구축되어 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좌익사건인 1964년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동백람간첩단 사건(1967)으로 밝혀진 민비련(민족주의 비교연구회)사건, 불꽃회사건(1967), 통혁당(통일혁명당)사건(1968),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1969)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세력이 완전히 발아했음이 확인된다.

1970년대는 좌익운동세력들이 1972년 10월 출범한 유신정권에 대항하여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목표를 은닉한채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가치를 내걸면서 세력 확산을 기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좌익세력들은 공개적으로는 일반 학생, 지식인 및 국민대중의 순수한 민주화 열망을 수단삼아 정권타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전개하면서 지하에서는 좌경의식화공작에 주력하고 북한과의 연계 속에 전국적 규모의 전위조직 결성을 시도하였다. 이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1974)과 남민전(남조선 민족해방전선)사건(1979) 등으로 가시화된다.

라. 1980연대 좌익운동

1980년대는 한국좌익운동사에서 양적·질적으로 일대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좌익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급속히 전국 규모화하여 그 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는 좌익운동성향이 단순한 민주화투쟁에서 공개적으로 친북·계급투쟁성을 표방하며 사회주의지향 투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남한판 좌익혁명론의 정립을 위한 치열한 사상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1980년초 '무학(무림-학림)논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982년 '야비-전망논쟁', '깃발과 반깃발논쟁'(MT-MC논쟁), 1985년의 'C-N-P논쟁', 1986년의 '자민투와 민민투논쟁'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 논쟁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 대표적인 이념논쟁의 서곡인 '무학논쟁'이란 무림-학림논쟁의

약칭으로 1980년 하반기부터 1981년까지 운동권 내부에서 당시 투쟁방향을 둘러싸고 전개한 일련의 사상투쟁을 지칭하는 것이다.

둘째, 야비-전망논쟁이란 학생운동의 투쟁노선과 관련하여 무림파의 논리를 계승한 '야비'(야학비판)와 학림파의 노선을 계승한 '전망'(학생운동의 전망)간의 논쟁을 의미한다.

셋째, 깃발-반깃발논쟁은 MT-MC 논쟁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깃발은 학생운동의 지도노선에 문제를 제기한 그룹의 기관지명인 '깃발'에 연유한 것으로, MT란 깃발 그룹인 민투(민주화투쟁위원회)의 영문발음 약자이며, 반깃발은 깃발그룹의 노선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MC는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을 의미하는 상징어인 'Main Current'(주류)의 영문약어이다. 깃발그룹은 학림파의 논리를, 반깃발그룹은 무림파의 논리를 계승하였다.

넷째, CNP논쟁이란 CDR(시민민주주의혁명), NDR(민족민주주의혁명), PDR(민중민주주의혁명)논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사회변혁론을 정립하기 위해 전개한 이론투쟁을 의미한다.

다섯째, 자민투-민민투논쟁은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라는 학생운동조직 노선과 민민투(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와의 이념투쟁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민투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일치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NLPDR)을 지도이념으로 정립하고 각종 친북투쟁을 전개해 오며 좌익운동을 주도하는 다수세력을 형성하였고, 반면 민민투는 레닌노선을 수용한 '민족민주 혁명론'(NDR)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각종 극렬투쟁을 주도해 오며 좌익운동의 소수파로 활동하였다.

이 논쟁을 NL-CA논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민투계를 지칭하는 NL파(NLPDR 파의 약어)와 민민투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CA(제헌의회) 그룹과의 논쟁에서 비롯된다.

여섯째, NL-PD-ND 논쟁은 당시 대표적인 3대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인 자민투계의 NLPDR론과 민민투계에서 파생된 PDR(민중민주주의혁명론), NDR(민족민주혁명론)과의 이념투쟁을 지칭한 것이다(이들 혁명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 국내좌익세력의 분 및 기본전」을 참조).

1980년대 중반 좌익운동권은 자민투계와 민민투계로 양분되어 공개적인 좌경 노선을 표방하며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했고 이들 세력이 분파되어 현재 자민 투계는 NL주사파계열로, 민민투계는 NDR파, PDR파, 트로츠키파, NL비주사파 등 맑스·레닌계열로 계승되었다.

마. 1990연대 좌익운동

1990년대의 좌익운동은 공산혁명을 위한 소수정예의 직업혁명가가 등장한 시기이며, 핵심좌익운동세력(전위세력)으로 완전히 직업혁명가한 시기였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좌익세력은 NL파 이외에도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인 좌익세력(맑스레닌계 : NDR, PDR, 트로츠키파 등)들이 대거 등장하여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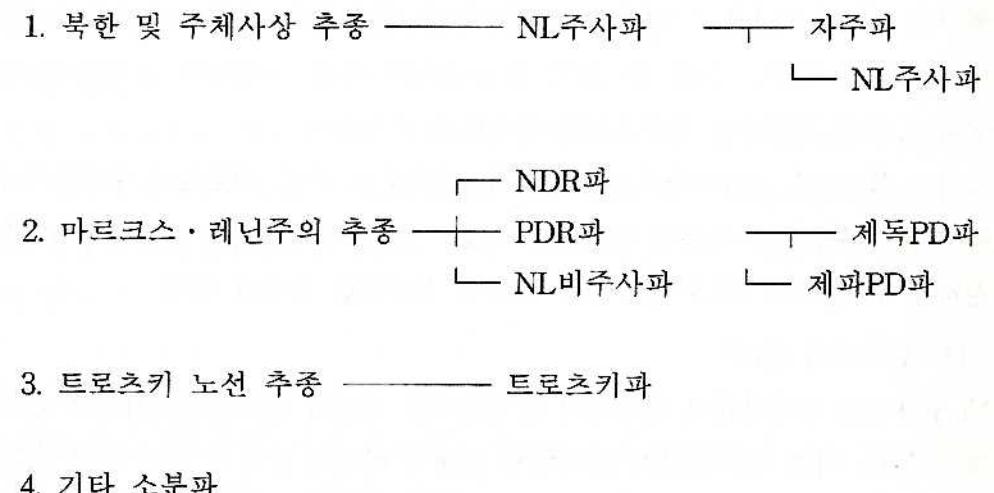
또한 이 시기 좌익운동권은 ①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무장되었으며, ② 조직규모를 확대하였고, ③ 간첩을 능가하는 철저한 조직보위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④ 투쟁양상도 합법, 반합법, 비합법투쟁을 적절히 배합 구사하고, ⑤ 투쟁영역도 북한 및 국제 맑시즘 조직과 직접 연계하는 등 비약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적발된 NL 사건으로는 범민련, 범청학련, 남한조선노동당(중부 지역당), 반제청년동맹, 활동가조직 등이 있고 맑스·레닌계 사건으로는 한국 사회주의노동당(창준위), 사노맹, 삼민동맹, 혁노맹, 혁사노, 남한투쟁동맹, 사회주의학생연맹, 전국학생정치연합, 국제사회주의자(I·S) 그룹 등이 있다.

3. 國內左翼勢力의 分派 및 基本戰略

현재 국내 좌익운동권은 매우 복잡하게 분파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크게 북한 및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① NL 주사파, ②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종하는 NDR파, PDR파, NL비주사파, ③ 트로츠키노선을 추종하는 트로츠키파 및, ④ 기타 소분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좌익운동권의 분파현황〉



가. NL주사파

NL주사파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하여 남한의 공산화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이다. 이들은 주로 NL(민족해방)파, 주사파, 친북운동세력 등으로 불리워진다.

NL주사파의 혁명전략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동 전략은 먼저 노동자계급,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으로 하고 반동관료 및 매판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보조역량으로 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먼저 미제를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한 다음 용공정권인 민족자주정권을 세우고 (1단계 NLPDR 완수), 이어 북한파의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 '사적소유 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2단계 완수)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NL주사파의 형성시기는 1985년 7월 27일 결성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 한민전, 통혁당의 후신)의 출범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 지하 좌익운동권에서는 그 동안 부분적으로 비밀리 반입된 북한관련 서적 및 복사본을 통해 학습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평양방송’ 및 「한민전」에서 운영하는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 강좌, 주체사상 교양 강좌, 정치철학 강좌 등 소위 운동강좌를 직접 녹취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방송 청취내용을 수록한 지하간행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체사상과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급속히 확산시켜 오늘의 소위 ‘주사파’라는 친북운동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NL주사파 이론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사회 평가

NL주사파는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정치체제 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사회이고, 현 정권은 미국의 대리정권인 허수아비 정권이라는 것이며, 경제체제 면에서는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형성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적 요소(지주-소작관계 등)와 전근대성 및 매판성 등이 중첩된 반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2) 한국사회의 모순관계

위와 같은 한국사회의 평가에서 미국은 한국민의 민족적 억압인 동시에 최대의 계급적 착취자, 침략자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한국사회의 지배자로 평가한다. 여기서 한국사회의 주요모순을 ‘미제 대 한국 민중’ 즉, 민족 모순으로 설정하고 있다.

(3) 한국혁명의 성격

NL주사파는 한국혁명의 성격으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족해방’이란 한국혁명이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 모순 해결을 뜻하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란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들과 그들이 파쇼통치에 반대하여 계급모순을 해결함을 뜻한다.

(4) 혁명역량 편성

NL주사파에서는 한국혁명의 동력으로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구분하여 편성

하고 있는데, 주력군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과 그 전위당을 보조역량으로 도시 소시민, 애국적 민족자본가, 애국적 군인, 중소상공인, 양심적인 종교인, 동요하는 인텔리 등 각계각층 민중을 들고 있다.

(5) 통일관

먼저 미제국주의 축출 후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광범위한 각계각층 민중이 참여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과 소위 사상, 이념 및 제도를 초월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결국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수용하고 있다.

나. NDR파

NDR파란 민주민주혁명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위 NDR론에 의해 한국사회를 공산화시키려고 획책하는 세력을 말한다.

NDR의 혁명전략은 레닌의 혁명론을 원용하고 있는 바, 노동자계급만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고 반동부르주아와 자유부르주아를 제외한 민중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하여 먼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다음에 미제를 축출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민중연합정권인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건설하고(1단계 NDR 완수), 북한파의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2단계 완수)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NDR파의 혁명관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에 입각해 있으며,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 전략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사회 평가

NDR파는 유물사관에 의한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미국의 신식민사회이며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이 결탁하여 민중을 수탈하고 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2) 한국사회의 모순

NDR파는 한국사회 평가에서 보듯이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의 지배를 강조함에 따라 '파쇼 대 민중'간의 모순을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설정하고 있다.

(3) 혁명성격

NDR파는 레닌의 연속 2단계 혁명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당면 혁명성격을 (1단계 혁명)을 '민족민주혁명'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의 토대를 침식하지 않는 혁명이라는 점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혁명 성격을 갖는다.

(4) 혁명역량 배치

NDR파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 계급을 설정하고 있다.

(5) 통일관

NDR파는 연방공화국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미·일 제국주의를 축출한 다음, 노동자계급 주도 하의 민중연합권력인 '민주주의민중 공화국'을 수립하여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결국 북한의 연방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다. PDR파

PDR파는 크게 ① 제독 PDR(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파, ② 제파 PDR(반제반쇼 민중민주주의혁명)파로 나뉘어진다.

제독 PDR파의 전략을 살펴보면 노동자계급을 주력군으로 하고 도시빈민과 빈농을 동맹세력, 부르주아를 전략적 동맹군으로 하여 제국주의와 독점자본 및 현 정권을 동시에 타도하고, 민주연합권력인 '민중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여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독점자본의 국유화'(여기서 중소상인의 사유재산은 인정)를 내용으로 하는 최소한도의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키고 나서 '사적소유 완전 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는 소위 '연속 1단계 2과정 혁명론'을 주장하였다.

제파 PDR파에서는 노동자계급만을 주력군으로 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미제를 축출한 다음 민중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바로 '사적소유 전면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혁명론이다. PDR파의 혁명전략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사회 평가

PDR파는 한국사회를 NDR파와 동일하게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서 국가권력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체제 즉, 신식민지 국가 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2) 한국사회 모순관계

제독 PDR파에서는 한국사회의 평가판에 따라 '제국주의 독점자본 대 한국민중' 간이 모순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제파 PDR파에서는 모든 분파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파쇼 대 민중'간의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설정하고 있다.

(3) 혁명성격

제독 PDR파에서는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한국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레닌의 PDR론에 입각하여 '1단계 2과정' 혁명론을 정식화 한 것으로 제국주의와 국내외 독점자본의 측면을 강조한 PDR을 의미한다. 제파 PDR파에서는 반제반파쇼 측면을 강조하는 PDR 즉,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내세우고 있다.

(4) 혁명역량 편성

제독, 제파 PDR파 모두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 계급과 그 전위당을 편성하는데는 일치하나 소위 보조역량 배치를 달리하고 있는 바, 제독 PDR파에서는 동맹세력으로 빈농과 도시 반프롤레타리아, 전략적 동맹군으로 뽐띠부르주아를 설정하고 있다. 제파 PDR파의 보조역량 편성은 각 분파 조직마다 천차만별이다.

(5) 통일관

PDR파의 통일관은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을 제거한 다음, 한국 내 민중민주주의 변혁을 성공시켜 남한의 민중민주주의 국가와 북한의 사회주의국가 사이에 체제와 이념을 통일하는 연방제통일(과도적 연방제)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연방제 통일을 내세우는 타계파(NL주사파, NDR)의 통일관과 큰 차이가 있다.

라. 트로츠키파

트로츠키파란 러시아의 공산혁명가인 트로츠키(Trotsky)의 혁명노선(영구 혁명론)에 입각하여 한국공산화 혁명을 획책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트로츠키파는 위와 같은 좌익계파 중 주로 사회주의 직투론(사회주의로 바로 진입한다는 의미)을 주장했던 소위 '제파 PDR파'(반제반파소 민중민주주의혁명파)에서 활동하다 80년대 말 소련대통령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토로 이카로 시발된 소련 및 동구공산권의 개혁바람을 타고 기존 사회주의권의 위기가 기정사실화하자 이의 대안 모색과정에서 태동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스탈린 시절부터 배교자로 규종하고 금기시 했던 트로츠키를 페레스토로이카와 더불어 소련당이 위대한 공산혁명가로 '트로츠키즘'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

(1) 기본적 세계관

트로츠키파는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계승한 트로츠키즘을 기본적 세계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들은 트로츠키즘일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그 당시의 정통 공산주의 노선은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세계체제 및 남북한 사회에 대한 평가

먼저 봉과 이전의 소련 및 동유럽 공산국가에 대한 평가를 보면 트로츠키파는 이들 사회주의 국가를 레닌 사망 이후 관료독재를 중심으로 하는 스탈린주의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변형시킨 '가짜 사회주의 체제'라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의 본질은 관료중심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심지어 이들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야바우'라고 혹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스탈린주의의 북한판인 주체사상으로 김정일 정권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관료중심의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3) 혁명성격

트로츠키파는 한국사회가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세계체제의 일원이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과 국가자본가계급의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으로 기존 사회주의권은 물론 세계차원에서 국가자본주의체제를 분쇄하는 영속적인 국제사회주의혁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통일관

트로츠키파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 노동자계급이 연대하여 한국 국가자본주의정권과 북한판 스탈린주의인 김정일 독재정권을 동시에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통일 사회주의 노동자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第8章 北韓離脫住民 對策

第1節 難民에 대한 國際法의 考察

1. 難民의 概念

가. 難民의 定義

난민은 원래 전과 등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피난민 또는 망명자를 뜻한다.¹³¹⁾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2항에 의하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 난민의 원인

난민의 원인은 크게 네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간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다. 둘째, 공산독재 하에서의 억압과 인권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우이다. 이는 과거 동독에서의 탈출과 1956년 헝가리 사태시 대거 탈출한 예에서 볼 수 있었다. 셋째 경우는 내전, 인종분규 또는 부족중심의 전쟁의 결과로 생기는 난민이다. 근래에 와서 특히 내전, 민족국가의 붕괴 또는 개편에 따른 난민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캄보디아 난민, 보스니아, 소말리아, 르완다의 문제가 그 전형적인 경우이다. 넷째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생기는 난민으로서 하이티와 쿠바로부터 대거 탈출한 난민들이 이에 해당된다. 빈곤은 독재정권의 경제적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131) 박치영, "북한난민의 법적지위 문제",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분부(1995), p. 406.

2. 난민의 요건

가. 자격요건

난민의 자격요건 특히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의 자격요건은 첫째, '박해로 인한 공포'와 둘째, '국적국 또는 상주국 이외의 자'이다.

(1) 박해로 인한 공포를 가진 자

(가) 迫害

① 박해의 사유

난민의 첫 번째 자격요건은 '박해로 인한 공포'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에 의하면 박해의 사유는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이유가 박해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규정은 순수한 경제적 이유는 난민의 자격요건 요소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경제적 난민도 난민으로 보려는 견해가 없지 않다.¹³²⁾

② 박해의 내용

박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의 일반적·열거적 규정은 없으나 박해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박해의 입증책임

박해의 입증책임은 난민 측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 같다. 1977년 3월 7일 미국항소법원은 *Piere v. U.S.* 사건에서 1972년과 1973년에 소형 보트로 미국에 밀입국한 216명의 하이티인 중 147명의 청원자들이 그들 자신은 19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상의 난민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그들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132)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서울 : 박영사, 1996), p. 732.

(나) 공포

① 공포의 요소

공포는 주관적 요소로서 '주관적 느낌'과 객관적 요소로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공포의 입증책임

박해로 인한 공포의 입증책임은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본국에 귀국하면 실제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

난민은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는 그가 국적국의 영역 밖에 있어야 하며, 그 국적국의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으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난민이 국적을 갖지 않는 경우는 그가 종전의 상주국의 영역 밖에 있어야 하며, 그 상주국의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을 때에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자격결정

(1) 자격결정의 주체

난민자격의 결정주체는 난민을 접수한 국가이다. 그러나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또는 19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締約當事國은 난민고등판무관¹³³⁾과 체결한 특별협정의 내용에 따라 난민고등판무관 또는 그 대표자의 자문을 얻어 난민고등판무관 또는 체약 당사국이 난민의 자격을 결정한다. 특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체약국이 난민의 자격을 결정한다.

다. 자격배제

난민에 관한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도 난민으로서 보호할 수 없는 자는 난민의 자격이 배제된다. 자격배제 사유에는 첫째, 전쟁범죄인 경우, 둘째,

133)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전세계의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세계적인 주요 인권단체로서 1951년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세계 140여개 국가의 2천 7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난민으로 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경우, 셋째,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¹³⁴⁾

3. 난민의 보호

가. 강제송환금지

이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¹³⁵⁾

나. 비호

비호란 본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 들어온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하고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¹³⁶⁾

다. 난민처벌 중지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난민을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¹³⁷⁾

4.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사례

가. 아프카니스탄 난민

아시아 중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아프카니스탄은 인구 17백만 명으로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실크로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8세기에 아랍계 이슬람교도 세력의 침입으로 이슬람으로 개종되었다.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이슬람교도 유격대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과의 분쟁 끝에 1978년에 친 소련 인민민주당에 의한 쿠데타가 성공하여 가카리정부를 출범시켜서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

13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F항

13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1항

136)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33조 참조

137)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1항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이슬람교도(전국민의 99%)인 무자헤딘 게릴라 세력과 충돌이 생겼다. 쿠데타로 다카리정부가 무너지고 반 소련 아민 정권이 집권한 후 1979년에 소련군이 전면침공을 감행하였고, 정부군과 친 소련 반정부 세력 간의 내전이 계속되면서 280만명의 난민이 파키스탄의 수용소로 도피하였고 150만명은 이란으로 탈주하여 난민이 되었다. 1989년 소련군 철수 후 1996년 반군세력 중의 하나인 탈레반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으나 반군 연합 세력인 북부동맹군의 저항으로 내전이 계속되어서 1997년에도 7만명의 기아·난민이 발생하여 국제 인권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와 인접국가의 난민촌에서 지원과 보호를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나. 동티모르 난민

호주 북서해안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서태평양에 위치한 인구 74만명의 작은 섬으로 4백여 년간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1974년에는 UN의 탈식민지화 계획에 따라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으나 1975년에 인도네시아의 침략으로 강점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회교국가로 인종, 종교, 언어, 문화적 전통에서 매우 다양한 국가이다. 인구의 90%가 카톨릭교도인 동티모르 지역에서 1975년에 독립혁명전선이 동티모르 독립선언을 하여서 독립전쟁이 지속되어 왔다. 자유 파푸아운동(서 파푸아, 기독교계)과 아체 지역(수마트라)의 총체적 유혈충돌로 동티모르의 전체 인구가 난민화 되었다.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로 살육과 굴üş림이 진행되는 것을 UN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국가분리와 독립이 진행 중이고 한국도 비전투요원을 파견하였다.



동티모르에서 우리군의 평화유지 활동모습

다. 캄보디아 난민

1867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고 1953년에 독립이 된 후에 테러, 쿠데타, 내전과 외세의 개입으로 국경 불안정을 경험하였다. 70년대에는 시아누크의 실각으로 친미적인 론를 정권이 성립되었으나 1975년에 크메르루즈(공산주의)의 정권장악으로 인구 7백만명 중에 2백만명의 대학살이 자행되는 킬링필드로 변하였다. 1997년에 혼센(친 베트남계)의 쿠데타로 내전이 재연 되었고 33만 여명이 전쟁과 기아로 난민이 되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중재로 태국에서 수용하였다.

라. 르완다 난민

아프리카 중동부의 내륙국으로 인구는 840만명(1994년 통계)이며 1961년에 벨기에의 식민통치 시기에 소수 민족인 투치족 우대정책을 펼친 결과로 독립 후에도 투치족(9%)이 지배계급이 되고 다수파이며 농경에 종사하는 후투족(90%)이 피지배계급이 되는 상황이 됨으로써 후투족이 정권쟁탈을 기도하는

내전이 발발하였다.

1961년 UN감시 하에 투표로 후투족 중심의 공화제가 성립하였으나 투치족의 투쟁과 학살이 자행되었고 240만 여명에 달하는 내전·기아난민이 발생하였다. 1993년에 UN안전보장 이사회가 휴전감시와 민간인보호를 목적으로 평화유지군(PKO)을 파견하였다.

마. 이디오피아 난민

이탈리아가 펼친 식민지정책의 유산으로 식민 종주국이 부족구성을 무시한 채 영토확장에만 골몰하여 72개 부족이 286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 부족국가 되었다. 독립 후 펼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족별 분리를 주장하는 독립 단체들의 무장투쟁으로 수만 명의 사망과 126만 여명이 넘는 내전·기아 난민이 발생하였다. 1984년에 UN은 난민구호에 나섰고 전세계적인 기아구제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바.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보호

동독주민이탈의 발생은 사회주의 체제가 비효율성을 이기지 못해서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수상이 체제개혁(페레스트로이카)을 선언한데서 자극 받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 1차로 131명이 동 베를린에 주재하는 서독 대표부에 진입하여 서독행을 요구하고, 이어서 1989년 8월 19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평화축제 행사를 하는 3~4시간 동안에 동독과 개방되어 있는 헝가리 국경을 통하여서 6백 여명의 동독이탈 주민이 오스트리아로 탈출하였다.

10월 1일에는 6천 여명의 동독이탈주민이 체코 주재 서독대사관에 잠입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자극 받은 서독정부는 헝가리와 외교협상을 벌려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쪽 국경을 계속 개방도록 하여서 10월 말까지 2만4천 여명을 서독으로 이주케 하여 통독의 길을 열였다.

第2節 北韓離脫住民

1. 國內 北韓離脫 住民의 現況

북한이탈주민은 분단이후 지속적인 유입을 보였다. 1990년대 이후 탈북의 숫자와 탈북의 형태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 동안의 탈북자들은 군사분계선으로 탈북하는 군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인사 등 출신성분이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제3국을 통한 한국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탈북 현상과 북한이탈주민 배경특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탈북의 가속화', '북한이탈주민 신분의 다양화와 가족동반 입국자 증가'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¹³⁸⁾

국내입국자 총괄현황(2001년 6월 15일 현재)¹³⁹⁾ 통일부 내부자료

연도	'48~'59	'60~'69	'70~'79	'80~'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인원	275	210	59	63	9	9	8	8	52	40	56	86	72	148	312	200
누계	275	485	544	607	616	625	633	641	693	733	789	875	947	1,095	1,407	1,607

통일부 자료를 보면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1994년도 이전에는 미미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도에는 증가세가 절정을 이룬다. 게다가 2001년도 10월 15일에는 이미 2000년도에 입국한 숫자를 뛰어 넘어 폭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138) “북한이탈주민 가족통계현황,”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여성의 역할」(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p. 15

139)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정치학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1) p. 83

2. 脱北原因

가. 共產圈崩壞와 經濟難 深化

북한은 종래의 공산주의권 체제가 와해되고 코메콘¹⁴⁰⁾이 해체됨으로써 대외 시장 기반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구상무역에서 경화결재(硬貨決濟)가 필요한 자본주의적 무역거래 방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재원조달과 물자교환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에너지와 부품공급을 받지 못해 경제가 총체적 파탄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북한 경제는 90년이래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왔고, 소비재 생필품의 위축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한편 한·소 수교와 소련붕괴에 이은 러시아의 국내정세 불안, '89년 이후 중국의 개방가속화와 한·중 수교 등 제반여건은 북한주민이 탈출할 경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적고 남한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 또한 중국의 개방가속화와 엄청난 경제발전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도한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충격과 탈출을 더욱 부추긴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 外部情報流入의 擴散

북한당국의 엄격한 주민통제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외부정보가 유입되면서 체제비판 의식이 증대되고, 불만과 사상해이를 유발해 탈북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는 일반주민들의 외부접촉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지만 최근에는 방북교포, 외교관, 무역업자 등으로부터 자유주의 사상 및 서방문물과 정보가 유입되고 남한의 발전상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140) COMECON(Communist Economic Conference)이란 미국의 마셜플랜에 대항하여 1949년 1월 결성된 공산 각국간의 경제협력기구로서 이 기구의 목적은 가맹국의 정책조정과 노력에 의해 각국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공업화의 추진·국민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데 있었다.

한편 중국의 개방가속화와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품귀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동북 3성¹⁴¹⁾과 북한간에는 변방무역과 물물교환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상점이 북한지역에 무려 1백70여개 정도 개점해 있어 북한주민들의 외부 접촉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채널이 고정되지 않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북한에 밀반입돼 남한의 발전상이 북한에 널리 유포되고 있다.

다. 北韓住民의 價值觀 變化

60년대와 70년대 북한 천리마운동과 청산리방법 및 대안의 사업체계로 대표되는 동원체계적 산업발전정책을 추진했고, 이 시기에는 물질적 유인보다 소비 절약과 사상통제 강화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의 부진에 따라 2년간(1985~1986)의 완충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에 경공업 및 생필품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테면 인민생활향상 정책,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 합영법 등이 완충기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인민 소비품 생산공장, 가내작업반 등 개인 부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치적·당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탈피, 이제는 '돈만 있으면 못 할 게 없다'는 배금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처럼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형성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외부정보 유입이 확산되는 것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대거 탈북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라. 統制體制의 副作用

북한사회는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사회적 유동성이 통제됨으로써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계층구조가 꾸준히 경직되어 왔다. 북한 당국은 전체 북한 주민을 핵심계층(전체주민의 28%, 5백98만명), 동요계층(45%, 9백62만명), 적대계층(27%, 5백77만명)으로 3분화한 후 이들을 다시 52계층으로 세분화 해놓고 있다.

이중 적대계층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입학, 진학 및 입당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또한 당국의 철저한 탄압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항적인 정치

141) 현재 교포는 2백만명 정도이고, 이들 중 97%인 190만 명 정도가 주로 만주지역인 지린성 (吉林省)·해이룽장성(黑龍江省)·랴오닝성(遼寧省) 등 동북 3성에 살고 있다.

사상범이 양산되는 결과를 놓는다. 북한 범죄자 중 약 80%가 소위 민족반역죄 또는 반혁명죄 등 정치사상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런 점은 입증된다.

이들 적대계층이야말로 북한체제가 약해지고 통제력이 이완·상실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통제가 아무리 철저하다 해도 국도의 좌절감에서 생지옥 같은 삶을 지탱하는 것보다는 사생결단의 탈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脫北者의 國際法的 地位

북한 이탈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러시아 별목공이거나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 경우 모두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 때문에 자국 밖에서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기 국가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북한 탈출자의 경우 난민의 요건은 '정치적 의견'과 '박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의 수용여부는 러시아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4. 關聯國家의 權利와 義務

가.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는 1993년 2월 2일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지원해야 할 협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탈출자가 난민자격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할 권리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인 1967년 3월 북한과 '소련연방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별목 및 목재종합가공협정'을 체결하였고, 1991년 8월 이 협정은 다시 체결되었으나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기로

로 1993년 12월 말로 이 협정은 다시 체결되었으나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기로 1993년 12월 말로 이 협정이 효력이 만료된 후에는 6월 24일 각서를 통해 '1994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별목협약이 러시아의 법률과 러시아가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에 맞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통보했었다.¹⁴²⁾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1995년 2월 평양에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유효한 러시아 임업자원 개발에 관한 임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국제적 비난과 압력으로 별목공에 대한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탄압을 시정하여 이들의 인권보장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즉, 별목공들의 하루 8시간 노동, 자유로운 타국으로의 여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국제법준수 의지는 탈북자의 처리에 있어서도 표명되어 탈북자의 권리를 되도록 존중하여 제3국인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9년 12월 북한이탈주민 7명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밀입국하려다 추방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이탈주민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으로 올 예정이었으나 난민지위부여 최종결정권을 가진 러시아 정부가 돌연 중국으로 추방하여 중국에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이다.¹⁴³⁾ 러시아는 북한과의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범죄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중국의 경우

중국은 1992년 9월 24일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중국도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지원해야 할 협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중국으로 입국한 북한탈출자가 난민자격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할 권리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은 북한 탈출자를 체포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로서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탈출자와 범죄인의 상호인도에

142) 김병로, "탈출자 배경분석" 민족통일연구원(1994. 5) p. 5.

143) 『중앙일보』, 2000. 1. 4.

관한 협정'을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1997년 11월에는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군 안전부에서 파견된 10명의 요원들이 중국공안과 함께 조선족 자치주 허룽시 일대에서 대대적인 탈북자 일제검거에 돌입 모두 92명을 체포, 북한으로 송환한 바 있다.

북한당국은 두만강변 중국측 마을들을 수색하는 한편 조선족 동포들에게 “북한인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들려날 경우 벌금을 현행 5백위안(약 4만 5천)에서 5천위안으로 올려 징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형법에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밀출입국 조력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탈북자의 국내유입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5. 韓國의 權利와 義務

가. 國際的 側面

한국은 1992년 12월 3일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여 가입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북한탈출자들을 위해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촉구할 수 있다.

즉, 탈북자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은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희망에 따라 제3국 즉,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탈북자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법 외에도 憲法 제2조 2항(在外國民 保護規定)¹⁴⁴⁾에 입각해서 재외공관에서 탈북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83년 4월 3일 외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재외공관에의 망명자 처리지침은 ‘북한에 거주하는 자는 我國 국민임으로 이들이 아국 공관에 대하여 귀순 또는 일시적 피난을 요청해 올 경우는 이를

144) 헌법 제2조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연히 인정하고 이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므로 탈북자가 북한 公民임을 인정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제약이 따르고, 북한도 양국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나. 國內的 側面

우리정부에서는 증가추세에 있는 탈북자들의 수용처리,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반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에관한 법률’¹⁴⁵⁾을 1997년 1월 13일 제정·공포하였다. 동법에 의거해서 탈북자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발생·입국단계, 보호·관리단계, 배출·정착단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발생·입국단계

(가) 기본원칙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특별한 보호를 행하며,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⁴⁶⁾

(나)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일시적 신변안전조치, 보호조치여부 결정을 위한 필요조사 등을 행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¹⁴⁷⁾

14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1997년 1월 13일에 제정되었다. 그후 세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제1조에는 목적으로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용·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14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다) 보호결정

① 경정주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한다.¹⁴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①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② 북한의 노동당·정무원·군·사회 안전부 및 국가보위부에서 북한체제수호를 위하여 적극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④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 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첨보를 가지고 있는 자 등이다.¹⁴⁹⁾

② 보호결정 기준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①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인 등 국제 형사범죄자, ②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③ 위장탈출혐의자, ④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⑤ 보호결정하게 되면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¹⁵⁰⁾

(라) 국내입국교섭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거나 일정한 경우 국가정보원이 독자적으로 정하며, 보호대상자의 이송시기, 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4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시행령 제12조

14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시행령 제15조

14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15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시행령 제16조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¹⁵¹⁾

(2) 보호·관리 단계

(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며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확인, 건강검진, 기타 정착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¹⁵²⁾

(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각각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¹⁵³⁾

(다) 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¹⁵⁴⁾

(3) 배출·정착단계

(가) 자격 등 인정

보호대상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자격의 일부, 이수한 학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¹⁵⁵⁾

(나) 직업알선

통일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15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15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153) 북한이탈주민의보호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15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시행령 제30조

15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14조, 시행령 제27조, 28조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¹⁵⁶⁾

(다) 특별임용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군인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의 임용 또는 국군에의 편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다.¹⁵⁷⁾

(라) 각종 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보호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마) 거주지 보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북한의 책임

북한은 난민문제의 원인 제공국으로서 이들이 임의로 귀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 이 보상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기본인권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탈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한 일종의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 독재체제 하에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특히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 북한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부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헌장과 인권에 관한 일반 국제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15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시행령 제32조, 35조

15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第9章 南北交流協力

第1節 南北交流協力 關聯法令

1. 남북교류협력의 법적근거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990. 8. 1. 법률 제4239호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1990. 8. 9. 대통령령 제1370호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2. 법령제정 의의

정부는 1988년부터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민족공동체를 회복 반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지의 실현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는 세계사적 흐름과도 일치하고 국민의 통일의지도 반영하며 질서있고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지와 그 실천적 노력의 결과 우리는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분단 47년만에 우리 법체계상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관계법령을 제정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이하여 우리도 세계사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권상실, 민족분단, 동족상잔이라는 통한의 20세기를 마감하고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결국은 통일번영을

이룩해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절차를 정하는 기본법이라는 법적 성격과 통일을 지향하는 법령으로써 신축성과 포괄성을 특성으로 하는 법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률이 입법단계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국가보안법과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 헌법과의 문제

우선 이 법률이 헌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형식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북한지역에 적용되지 못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정책의 현실적 기초가 상실되는 것은 물론 동 법률의 성립기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규정된 영토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권의 효력범위를 축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가피하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현실을 인정하는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 법률이 헌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헌법전문과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헌법이념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근거는 제3조가 아니고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무조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과 결부될 때에 범죄 구성요건상의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제정으로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第2節 交流協力 節次

1. 住民往來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 1항). 방문증명서의 발급절차로서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사진 및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1항).

우리 국민 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었거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함으로써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8조 1항, 2항), 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北韓籍(북한적)을 보유한 우리동포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여행증명서만 소지하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협력 시행관계자나 북한지역사무소 주재원 등이 필요할 때에는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수시 방북을 승인하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방북자는 귀환시마다 방문증명서를 반납하고 방북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 3항).

남북한 왕래시 방문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의 방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6조). 아울러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해서 남북한 당국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0조).

동법은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문시 행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왕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7조 3항).

2. 住民接觸

남한의 주민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9조 3항). 방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접촉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시행령 제19조 1항).

남북한 주민의 접촉승인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행사에 참가한 남한 주민이 동 행사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일단 접촉한 후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9조 3항, 4항).

3. 交易

남북한간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역당사자가 남북한간에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 할 때에는 대상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에 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3조).

교역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남북한간의 교역이 단순한 물품의 이동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 실현에 기여하는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남북

한의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무역관행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법 제12조).

남북한 교역이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그리고 남북교역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무관세원칙을 채택하였다(법 제26조 2항 단서, 시행령 제50조 3항의 1).

4. 協力事業

남북한 협력사업의 승인은 먼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협력사업자가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였다(법 제16조).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얻으려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시행령 제30조).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상대자와의 협의서 및 북한 당국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시행령 제34조).

5. 節次違反時 措置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주민간의 왕래, 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류협력 행위를 한 경우 처벌(법 제27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아닌 교류협력 행위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법 제27조 1항), 좀 더 경미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부의 조정명령 또는 정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2항).

그러나 처음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목적이나 또는 해가 될 것을 알면서 교류협력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교류 협력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동 법 제3조).

중앙경찰학교 교재편찬위원회

■ 학 교 장

치 안 감 서 영 호

■ 편 집 위 원 장

교무과장 총경 신 찬 섭

■ 교 재 편 찬 위 원

교 수 계 장: 경정 이 운

교 무 계 장: 경감 유난수

경 무 학 과 장: 경감 하명수

생활안전학과장: 경감 김재문

수 사 학 과 장: 경감 정환웅

경비교통학과장: 경감 조영우

정보보안학과장: 경감 최순호

전·의경학과장: 경감 이병근

훈련학과장: 경감 김준식

무 도 학 과 장: 경감 오정주

■ 교 재 편 찬 담 당 교 수

경감 최순호, 경위 김명재

경위 소병일, 경위 장지철

정보·보안

2005年 3月 日 印刷

2005年 3月 日 發行

發 行 處 : 中 央 警 察 學 校

發 行 人 : 徐 永 昊

印 刷 : 충청북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住 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24-1

電 話 : 043)255-9630

〈非賣品〉

※ 本書의 無斷·複製를 禁합니다.